



사망 혜택 설명서 (Death Benefits)

연금국은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을 관장하며, 미국 장로교단 관련 기관에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자격이 되는 가입자들에게 은퇴, 의료, 사망, 그리고 장애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연금국은 보조프로그램을 통하여 재정적, 그리고 직업상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이 설명서는 연금국이 제공하는 플랜과 프로그램, 서비스의 주요 사항을 요약합니다.

혜택 요약 (Summary)

미국 장로교 혜택 플랜은 갑작스런 수입원을 상실하는 것으로부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사망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근무중이거나 장애자인 가입자 (Active and Disabled Members)

배우자 연금*과 일년 간 무료 의료 혜택 (가입자가 사망 당시 의료 혜택에 등록하고 있었을 경우) 이외에 근무 중이거나 장애자였던 가입자의 자격이 되는 배우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망 혜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s).** 지정된 수혜자에게 사망 혜택 기준액**과 같은 액수를 12 번에 나누어 같은 액수가 지불됩니다.
- **일괄 지급 사망 혜택 (Lump-Sum Death Benefit).** 자격이 되는 배우자나 가입자의 에스테이트로 사망 혜택 기준액에 연령에 따른 %를 곱하여 최대 \$100,000 까지 지불됩니다.

일괄 지급 사망 혜택 지불 비율 (자격이 되는 배우자를 가진 가입자를 위한)

사망시 나이	%	사망시 나이	%	사망시 나이	%
31 세 미만	400	37	260	44	160
31	380	38	240	45	150
32	360	39	220	46	140
33	340	40	200	47	130
34	320	41	190	48	120
35	300	42	180	49	110
36	280	43	170	50 세 이상	100

- **자녀 교육 혜택 (Children’s Education Benefit).** 25 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학하는 대학에 풀타임으로 재학하는 첫 4 년동안 매년 \$10,000 씩, 각 자녀마다 지불되며, 한 자녀당 최대 혜택은 \$40,000 입니다.

또, 사망 혜택에는 시한부 가입자 사망 혜택 (Living needs benefits)이 포함됩니다. 이 혜택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담당의사가 24 개월안에 사망할 것으로 진단한 시한부 가입자는 살아있는 동안 급여 지속 혜택과 일괄 지급 사망혜택의 일부를 미리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은퇴한 가입자 (Retired Members)

근무하던 가입자가 바로 은퇴 연금을 신청한 경우 사망한 가입자의 자격이 되는 배우자는 아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속 혜택 (Salary Continuation Benefit).** 은퇴한 지 3년 안에 사망한 경우 지정된 수혜자는 은퇴 당시 받던 급여(파트 타임일 경우 근무 시간수에 비례하여 계산)나 중간 급여 중 높은 액수가 매 3개월마다 1/12 씩 줄어드는 액수를 받게 됩니다. 그 액수가 \$9,000 이 안될 경우나, 은퇴한 지 3년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일시불로 \$9,000 을 지급받게 됩니다.
- **자녀 교육비 혜택 (Children's Educational Benefit).** 사망한 가입자의 부양 자녀가 25 세 미만이고 고등 학교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full-time 학생일 경우, 첫 4년동안 일인당 매년 \$10,000 씩 총 \$40,000 까지 교육비로 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권이 있는 휴직 중인 가입자 (Terminated Vested Members)

(연금 플랜을 받고 있던 근무지에서 사임할 때 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은퇴 가입자를 포함합니다).

Rule of 70*** 규정을 충족한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의 수혜자는 일시불로 \$9,000 을 지불하는 급여 지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에는 플랜의 혜택과 제한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설명서와 공식적인 은퇴 저축 플랜 문서와 차이가 있을 때에는 공식적인 플랜 문서가 우선합니다. 공식적인 문서를 원하면 pensions.org 를 이용하거나, 800-773-7752 (800-PRESPLAN) 으로 전화하여 요청하십시오.

*배우자 연금은 연금 수령권이 있는 가입자가 은퇴 전이나 후에 사망했을 때 자격이 되는 배우자에게 지불됩니다. The Pension Plan of the Benefits Pla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를 참고하십시오.

**사망 혜택 기준액은 가입자의 실제 급여나 가입자의 고용직급에 따른 중간 급여 중 더 높은 액수입니다. 이 액수는 연금 크레딧 축적을 위한 IRS 최대 급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2018년에 \$275,000)

***Rule of 70 를 충족하려면, 가입자가 자격이 되는 곳에서 퇴직할 때 55 세나 그 이상이어야 하고, 사망 장애 플랜에 적어도 5년 이상 가입했어야 하며, 퇴직할 때 사망 장애 플랜에 가입하고 있었어야 하고, 퇴직할 때 가입자의 나이와 혜택 플랜 참여 연수를 합하여 70 이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